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·후 비교표

- 다 음 -

| 항목 | 변경전 | 변경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3 항 | <신설> | 15. 클래스 A-G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되,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선취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선취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(신설 2017.04.29) 16. 클래스 C-G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되,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판매 보수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(신설 2017.04.29) |
| 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1 항 | <신설> | 15. 클래스 A-G 수익증권 (신설 2017.04.29) 16. 클래스 C-G 수익증권 (신설 2017.04.29) |
| 제 39 조(보수)3 항 | <신설> | (클래스 A-G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 (신설 2017.04.29) (클래스 C-G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9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 (신설 2017.04.29) |
| 제 40 조(판매수수료) | <신설> | 2. (클래스 A-G) 납입금액의 0.6% (신설 2017.04.29) |
| 제 41 조(환매수수료) 2 항 | 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, 클래스 I, 클래스 S , 클래스 Ce 및 클래스 CW 수익증권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| 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, 클래스 I 및 클래스 S, 클래스 Ce, 클래스 CW, 클래스 A-G 및 클래스 C-G 수익증권 (개정 2017.04.29)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|

| | | |
|-----|------|--|
| 부 칙 | <신설> |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증권신고서(일괄신고서)의 효력발생일(2017년 4월 29일)에 효력이 발생하며, 효력 발생일부터 기존 투자신탁약관을 대체한다. |
|-----|------|--|

-끝-